#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한 2020년도 전남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

(개)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은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전남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2020년도 전남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2019년 12월 26일

(재)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

# 2020년 지원사업 한 눈에 보기

### [알아두기!]

첫째,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문화 진흥을 위해 총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, 크게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으로 구분됩니다.

둘째, 모든 공모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을 통해서 이루어지며, 예산교부 및 정산은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-'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',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-'e나라도움 시스템'을 활용하여야 합니다.

No	lo 구분 사업명			자	원신청 분	분야		지원	자격	해당	1	휴식년제		
NO	구분	,		전통	시각	공연	문학	연구	개인	단체	페이지	개인	딘	체
			전통예술	•					•	•				
		지역	시각예술		•				•	•			3	
1		문화 예술	공연예술			•			•	•	P.12~ P.13	격 년	년 연 속	
	7101	육성	문학				•		•	•		제	4	4
	지역 문화 예 <del>술</del>		문화 예술연구					•	•	•				년 연 속
2	특성화 지원	l .	화예술 외교류	•	•	•	•	•	•	•	P.14~ P.15			4
3	사업	l .	연예 <u>술</u> 창작			•				•	P.16~ P.17			
4		I	지던스 로그램		•					•	P.18~ P.19			
5		I	리마을 페스티벌	•	•	•	•	•		•	P.20~ P.21	_	-	
6		_	<u>년</u> 예술가 활동	•	•	•	•	•	•		P.22~ P.23			-
7	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				•				•	P.24~ P.33			4 년 연 속	

# 2020년 지원사업 주요 개선사항

20	019년	변경		2020년	건나	
단위사업	세부사업	사항	단위사업	세부사업	개선사항	
	① 전통예술	▶유지		① 전통예술	· 단위시업명 변경	
	② 시각예술	▶유지	지역문화 예술육성	② 시각예술	· 세부내용 개선 - 5개 분야별 명확한 개념정리를	
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	③ 공연예술	▶유지		③ 공연예술	통해 지원자들의 혼동 방지 - 한국음악(국악) 장르를	
	④ 문학	▶유지		④ 문학	전통예술에서 공연예술로 변경 - 문화예술연구 - 작고예술인선양사업	
	⑤ 문화예술연구	▶개선		⑤ 문화예술연구	등 연구사업 추가	
	술해외교류 원사업	▶개선	문화예술해외교류		· 단위사업명 변경 · 세부내용 개선 - 인바운드, 아웃바운드 예산항목 세분화	
공연예술작품제작 지원사업		▶개선	공연예술창작		· 단위사업명 변경 · 세부내용 개선 - 3회이상 공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쇼케이스 및 공개리허설 포함	
공간연계형 창작 지원사업		▶개선	레지던스프로그램		· 단위시업명 변경 · 세부내용 개선 - 공모를 통한 입주작가 선정 명시 - 인건비 지원 비율 설정	
남도문예 르네상스 기획사업		▶폐지		-	· 단위사업 폐지 - 전남도 사업과 중복 지원 및 타 단위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한 폐지	
주민밀착 <del>형문화예술</del> 지원사업		▶개선	우리마 <del>을</del> 아트페스티벌		<ul> <li>단위사업명 변경 및 개선</li> <li>전남에 특화된 마을단위의 문화예술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아트페스티벌 기확운영</li> <li>주민이 주도하고 함께하는 기획사업</li> </ul>	
청년예술가활동지원사업		▶개선	청년	연예술가활동	· 단위사업명 변경 · 세부내용 개선 - 청년예술가 집중 지원을 위한 단체 지원 제한	
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		▶개선	공연장성	수단체육성지원	· 세부내용 개선 - 예술위 매뉴얼을 반영한 사업운영 - 공연장 예산매칭에 대한 평가반영	

## Ι

# 2020 전남 문화예술지원사업 개요

# 1. 사업구성

No	구 분	사 연	겈 명	사 업 내 용	지원한도
			전통 예술	<ul><li>◈ 전남의 전통문화를 소재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 (전통 문화예술 복원, 보존, 계승 재현 등)</li></ul>	
		지역	시각 예술	◈ 단체(개인)의 시각예술 창작 및 전시활동	
1		문화 예술	공연 예술	<ul><li>◈ 단체(개인)의 창작 공연활동</li><li>(연극, 무용, 음악, 한국음악(국악) 등)</li></ul>	3백만원 ~ 10백만원 이내
		육성	문학	◈ 단체(개인)의 문학활동을 통한 창작 발간	
			문화 예술 연구	◆ 작고 예술인 선양사업 포함 문화예술 연구·조사 사업 (문화예술 비평, 포럼, 세미나, 심포지엄 등)	
2	지역 문화 예술 특성화		예술 교류	<ul><li>◆ 국외 또는 도내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 교류 활동 (해외 교류전시·공연, 해외 예술가와의 협력사업 등)</li></ul>	30백만원 이내
3	지원 사업	l원 고여에스		◈ 공연예술단체의 초연 작품 창작 및 발표	50백만원 이내
4		레지 프로	던스 그램	<ul><li>◈ 레지던스 공간을 활용한 창작 지원, 전시, 교류 활동</li><li>◈ 레지던시 작가 공모·선정을 통한 창작활동 지원</li></ul>	70백만원 이내
5		우리마을 아트페스티벌		<ul> <li>◆ 마을 단위의 문화예술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특화된 아트페스티벌 기획, 개발·운영</li> <li>◆ 주민이 주도하고 함께하는 차별화된 아트 페스티벌</li> </ul>	40백만원 이내 ( <b>지자체 1:1</b> 매칭 필수)
6	청년예술가 활동			<ul> <li>♦ 청년 예술가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</li> <li>■ 창작준비(1년차) : 창작준비 및 역량강화</li> <li>■ 창작발표(2년차) : 창작활동·발표 및 역량강화</li> </ul>	■ 창작준비(1년차) : 10백만원 이내 ■ 창작발표(2단계) : 15백만원 이내
7	7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		_	<ul> <li>◈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연예술 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및 공연장 활성화 도모, 지역 주민 문화향수 기회 확대</li> <li>※ 1개 공연장 당 1개 단체 상주 제한</li> <li>※ 수행 프로그램 : 창작초연(1), 레퍼토리(2), 퍼블릭 프로그램(1), 교류협력 프로그램(1)</li> </ul>	8천만원 ~ 2억원 이내 ( <b>공연장 예산매칭</b> <b>평가반영)</b>

####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Ш

#### 추진일정 1.

구 분		일 정
	공 고	2019. 12. 26.(목) ~ 2020. 1. 28.(화) / 34일간
	사 업 설명회	2019. 12. 31.(화), 2020. 1. 3.(금), 1. 6.(월) / 3일간 ※ 동부권(순천), 서부권(무안), 중부권(담양) / 총 3회 추진 (예정)
1차	접 수	2020. 1. 13.(월) ~ 1. 28.(화) 18:00 / 16일간
	심 의	2020. 1. 29.(수) ~ 2. 19.(수)
	결 과 발 표	2020. 2. 21.(금) ※ 전남문화관광재단 누리집(www.jact.or.kr)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 공지
2차 (예정)	공 고 (예정)	2020. 6월 (예정) ※ 1차 공고 후 <b>지원사업 잔여예산이 발생된 경우</b> , 본 사업구성 내에서 2차 공고를 추진할 수 있음

※ 해당 일정은 추진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신청방법

○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

#### [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방법]

- ① 시스템 접속 ② 회원가입\*(단체, 개인 구분 필수) ③ 지원신청 사업 선택

④ 지원신청서 작성 ⑤ 최종제출하기 클릭

- ⑥ 지원신청내역 확인
- \* 회원가입방법 : 시스템 접속 → 회원가입(개인 및 단체 구분) → 주민등록번호 및 단체 고유번호 입력 실명(단체)확인 → 기본정보 입력(아이디 및 비밀번호 생성)
- ※ 자세한 내용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 매뉴얼 참고
- ※ 지원신청서 작성 전,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회원정보(담당자 이름, 연락처, 주소, 단체소개· 경력 등)는 반드시 최신 정보로 수정
- ※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
- 사업관련 문의처 : 전남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 061-280-5822~5825
- NCAS 관련 문의처 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콜센터 1577-8751

# Ⅲ 공통 안내사항

## 1. 시 지원신청 공통조건 안내

#### ○ 지원신청 자격

- 공고일 기준으로 거주 주소를 전남도에 두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 (주민등록 초본, 사업자 등록증 등 거주주소 확인 예정) ※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필수
- · 개인 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 회원가입 후, 지원신청 가능
- · 단체 : 사업자등록증/법인등록증/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(NCAS) 회원가입 후, 지원신청 가능

#### 〈우대사항〉

#### ※ 증빙자료 제출 필수

- ㅇ 문화예술진흥법(제7조)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
- ㅇ 재단 문화예술인력 사업 수료자가 기획 · 추진하는 사업
- ㅇ 2019년 전라남도 문화상 수상자

#### ○ 지원신청 불가

#### 1. 지원신청 부적격자

#### 단체·개인 공통 지원제한·불가 사항

- 2019년 문화예술지원사업에 지원·선정 되었으나,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※ 단, 정당한 사유로 재단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와 재단이 정하는 기간 중 사업 포기한 경우는 예외로 함
- 2019년 지원을 받아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2020년도 지원신청 접수 마감일 까지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  - ※ 단 정신보고를 하였으나 재단에서 보완요청 중인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재단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
- 2019년 문화예술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, 2020년도 지원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반납하지 않는 경우
- 보조금 관계 법령 등의 처리 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경우

#### 개인 지원제한·불가 사항
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

#### 단체 지원제한·불가 사항

- 국·공립(도·시·구·군립) 문화예술 기관·단체 및 지자체 출연기관
-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
-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학교·종교기관·친교단체 등과 이들 기관 소속 또는 운영 단체

#### 2. 사업별 휴식년제 적용대상

#### ◎ 지역문화예술육성

- 2019년도에 지원을 받은 개인 : 2020년 휴식년임
- 지역문화예술육성으로 3년('17~'19) 연속 지원을 받은 단체 : 2020년 휴식년임

#### ◎ 문화예술해외교류, 공연예술창작, 레지던스 프로그램, 우리마을 아트페스티벌

-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4년('16~'19) 연속 지원을 받은 단체 : 2020년은 휴식년임

#### ◎ 청년예술가활동

- 연속지원(1년차-2년차 지원)을 받기 때문에 휴식년제 적용 없음

#### ◎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

-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으로 4년('16~'19) 연속 지원을 받은 단체
  - : 2020년 휴식년임

#### 3.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

-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
- 시설건립 · 매입 · 재건축 사업
- 기금을 통한 재교부, 기금 적립, 융자지원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
- 동일한 내용으로 당해 연도 공모사업으로 문예진흥기금, 국비, 지방비를 지원받은 사업

#### 4.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응모 시 처리

- 심의위원회에서 결격사유 안내 및 '0'점 처리
-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,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

#### 5. 다중지원 총량 제한

- 1개 단체(개인)에 대하여, 2020년 전남문화관광재단의 모든 지원사업 공모에 최대 2건까지 선정·지원 가능하며, 지원금은 통합하여 80백만원 이내로 제한함
  - ※ 따라서,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선정단체는 해당 1개 사업만 수행 가능함

### 2. 시 심의계획

#### ○ 심의방침

- 국내 문화예술계 외부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에 전문성 확보
- 심의위원의 동의를 얻어 심의위원 및 심의 절차와 평가기준 등 심의결과 공개

#### ○ 심의방법

1차 심의 (내부 행정심의)				
▼				
2차 심의 (심의위원회/서류심사)	사업목적/기획의도 적절성, 사업의 예측성과, 사업실현 가능성,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에 대한 서류심사			
3차 심의외부 전문가 및 사업 담당자 현장평가(전문가 현장평가)※ 사업에 따라 현장평가 추진 여부 결정				

사업목적/기획의도 적절성, 사업의 예측성과, 사업실현 가능성,

※ 사업에 따라 심의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. 사업별 공모요강을 확인 필수

(심의위원회/인터뷰 심사) │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층 인터뷰 심사

#### ○ 심의위원회

심의위원회는 「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 운영규칙」 제3장에 의거 운영

- 구성인원 : 외부(전남도 외) 심의위원 비율 1/3 이상 위촉
- 심의위원 선발 : 전문가 추천 및 공모를 통한 인력풀 구성, 무작위 추첨을 통한 선발
- 심의위원회 역할
- ·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서면심의(수행능력 및 활동실적, 타당성 여부를 판단) 및 인터뷰 심사
- · 심층적인 평가 및 단체의 발전을 위해 심의위원 중 일부 위원에 한해 책임심의위원 으로 위촉하여 사업평가 및 컨설팅 참여

#### "심의기피제도"시행

4차 심의

- ㅇ 심의위원 본인 및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
- ㅇ 공고일 기준 임원(회원)으로 소속하였던 단체와 관련된 사업
- ㅇ 본인이 판단하기에 지원심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
- ㅇ 심의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서약서 제출 의무화

### 유의사항

3.

# · 개인 및 단체의 자부담 편성 의무 없음 (자율결정) · 지원 사업별 신청자격, 필수 제출서류 등 확인 · 지원사업 관련 법률 및 규정 사전 숙지 및 준수 ·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시, 교부취소 및 보조금 반환 등 신청 시 행정조치 ·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'사업포기 신청서' 제출 필수 ※ 1개월 이후에 적절한 이유 없이 사업 포기신청의 경우 차기년도 사업신청이 제한됨 ㆍ 지원 대상 확정 이후 사업내용 변경은 불가하며, 신청서 작성 시 총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작성해야 함 지원금 · 산출근거는 **문화체육관광부의 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」을 준용**하여야 함 사용 및 예산 편성 ㆍ 지원신청서 대비 총사업비의 변동이 심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 시 · 문화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나 경상운영비 및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 사용불가 · 선정단체 및 개인은 재단이 추진하는 **컨설팅. 평가 및 워크숍 참석 필수** · 선정단체 및 개인은 저작권법 및 회계교육 참석 필수 · 사업시작 2개월 전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 교부신청 사업 (사업등록) 필수 수행 시 ※ 단,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경우 e-나라도움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 등록 및 교부신청 ※ 최종 보조금 교부신청 마감은 10월 31일이며, 그 이후는 사업포기로 간주함

- ㆍ사업 선정 후 보조사업 전용 통장 및 보조사업비 카드 개설
- ㆍ 사업 수행 후 보조금 교부신청 불가
- · 사업 수행 시 각종 홍보물 및 결과물에 후원 사업임을 명시
  - ※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: 전라남도, 전남문화관광재단 (CI 또는 후원)
  - ※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: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전라남도, 전남문화관광재단 (CI 또는 후원)

## 사업 수행 시

- ㆍ 사업 수행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 체결
- · 일부 사업은 현장 평가를 진행, 평가 결과는 다음 해 사업지원 신청 시 심의자료로 활용
- · 사업 홍보를 위해 재단 담당자의 사업 관련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
- · 최종 사업집행 마감일은 사업 회계연도 마감일(2020. 12. 31.)을 반드시 준수
  - ※ 사업 내용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단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

## 정산 시

- · 사업수행단체는 집행정산 및 정산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1개월 내에 제출해야하며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
  - ※ 정산보고를 사업수행 종료 1개월 내에 하지 않을 경우, 차기 년도 지원에서 불이익 조치
  - ※ 정산 증빙자료는 추후 선정단체 워크숍을 통해 세부 안내 및 교육 추진 (예정)
- · 지원 확정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사실이 밝혀졌을 때, 당초 계획을 재단 승인 없이 변경하여 수행하였을 경우, 지원금 교부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

## 4. 기원신청서 작성 안내

### 사전 준비

- ► 사업별 공고내용 확인 (신청자격, 지원내용, 필수제출 자료 등)
- ►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 가입 및 접속 ※ 개인 신청 시, 단체 사업으로 신청 불가(개인예술 활동으로 신청)



### 회원정보 수정

► [내정보방]에서 단체 및 개인 정보를 최신으로 수정 (대표자 및 담당자 이름, 연락처 , 주소, 소개 및 경력 등) ※ 추후 정보 미수정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개인과 단체 책임



지원신청 > 지원관리에서 지원가능사업 확인 후 신청서 작성

[신청개요] ※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

► 신청사업명 : 행사명, 프로그램명, 책자제목 등으로 작성

#### [사업운영계획]

- ▶ **사업 목적 및 기획의도** : 해당 사업을 지원한 계기, 사업
  - 목표. 추진방향 등 작성
- ► 세부사업내용 : <u>필수 기재사항(</u>개요, 세부계획)을 포함 작성

#### [수입예산]

## 지원신청서 작성

- ▶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에 신청하는 보조금
  - : 보조금 신청액 작성
- ► 순수한 단체의 자체자금 : 자부담 계획이 있을 경우 작성 ※ 기타 : 계획이 있을 경우 작성(특히 공공재원의 경우 확정 예정일 경우만 작성)

#### [지출예산]

- ▶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
  - ※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의 보조비목·보조세목별 산정기준 참고
- ▶ 산출근거는 세부적으로 작성
  - ※ 예) 출연자 A급 500,000원 X 3명
- ► 지출총금액(원) :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총 금액 지원신청액(원) : 전남문화관광재단에 신청하는 보조금

#### [사업성과(예측)]

- ▶ 기대되는 사업성과 및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
  - 해당 사업이 지역 또는 지역민에 미치는 영향
  - 해당 사업이 본인 또는 단체에 미치는 영향
- ▶ 계량적인 결과예측
  - : 해당되는 부분에 성과를 계량화(숫자)하여 작성



#### •

- ▶ [저장] [미리보기]
- 저장 및 최종제출 ▶ 내용 확인 후, 지원마감 전 [최종제출]
  - ※ [최종제출] 후 수정사항 발생 시, [제출취소] 후 수정 가능

세부사업내용 필수 기재사항						
공연	시각	문학(발간)				
<ul> <li>사업개요</li> <li>행사명(공연명)</li> <li>일시/횟수/소요시간</li> <li>장소</li> <li>사업대상</li> <li>행사내용</li> <li>세부 프로그램         (주제, 줄거리, 곡명 등)</li> <li>주요 제작진 및 출연진         (총 OO명)</li> <li>OO역할: OOO(이름)</li> <li>추진일정</li> <li>O월 O일 ~ O월 O일</li> <li>후진내용</li> <li>홍보계획</li> <li>온·오프라인 홍보 및 기타 홍보계획</li> </ul>	<ul> <li>사업개요</li> <li>건시명</li> <li>건시기간</li> <li>전시장소</li> <li>사업대상</li> <li>전시다용</li> <li>전시주제</li> <li>전시작품 종류 및 작품 수</li> <li>전시구성 및 연출방안</li> <li>참여작가 (총 OO명)</li> <li>전시 기획자</li> <li>및 참여작가 명단</li> <li>추진일정</li> <li>O월 O일 ~ O월 O일</li> <li>: 추진내용</li> <li>홍보계획</li> <li>온·오프라인 홍보</li> <li>및 기타 홍보계획</li> </ul>	■ 사업개요 - 책 제목 - 발간시기 - 작품규모(작품 수, 페이지) - 사업대상 ■ 주요내용 - 주제 - 목차, 줄거리 ■ 참여작가 (총 OO명) - 집필진 이름 및 수록 작품 수 ■ 추진일정 - O월 O일 ~ O월 O일 : 추진내용 ■ 홍보계획 - 온·오프라인 홍보 및 기타 홍보계획 ■ 배포 등 활용 계획				



## 지역문화예술육성

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은 전통예술, 시각예술, 공연예술, 문학, 문화예술연구 등 문화예술 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및 전문예술인을 소액다건 형태로 지원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.

신청자격	◈ 전남도내 거주 예술단체 및 예술인					
	◈ 도내 시	·군 지역에서 진행되는 전문 문화예술 활동				
	분 야	사 업 내 용				
		5개 분야				
	전통예술	► 전통 문화예술 복원, 보존, 계승, 재현 활동 ► 민속놀이, 세시풍속 등 전남 도내 유·무형 전통문화유산 사업				
지원영역	시각예술	► 단체(개인)의 시각예술 창작 및 전시활동 ► 미술, 공예, 서예, 사진, 영상, 조각, 설치 등				
	공연예술	► 단체(개인)의 창작 공연활동 ► 한국음악(국악), 연극, 무용, 음악 등				
	문학	► 단체(개인)의 집필 및 문학활동을 통한 창작 발간(출판)사업 ※ 창작발간 결과물은 사업종료 후 3권 제출(전남도립도서관 기증)				
	문화예술연구	<ul><li>작고 예술인 선양사업 포함 문화예술 연구·조사 사업</li><li>문화예술 콘텐츠 정보화사업</li><li>문화예술 비평, 포럼, 세미나, 심포지엄 등</li></ul>				
<b>지원항목</b> (예시)	◈ 문화예술 창작·발표를 위한 출연료, 대관료, 홍보비, 인쇄출판비 등					
지원한도	◈ 사업별 3백만원 ~ 10백만원 이내					

사업추진 절 차	사업 신청 사업 신청 - 2차 - 심의위원회 (서류심사) 전문가 현장평가					
	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 /모니터링 /만족도 조사 ※ 일부사업 추진					
심의기준	1차 재단행정심의 신청자격 부합여부, 필수자료 제출 등					
2차 사업목적/기획의도 적절성, 사업의 예측성과, 사업실 <sup>1</sup> 예산 편성의 적절성 등						
우대사항	<ul><li>◈ 장애인, 다문화,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(개인)</li><li>※ 증빙서류 제출 필수</li></ul>					
	단체 제출자료					
	1. 지원신청서 (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)					
	2. 첨부자료 - 고유번호증 / 사업자등록증 / 법인등록증 중 1개					
	- 단체의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 실적자료 3개 이내					
	※ 행사명, 행사일시, 주최·주관, 출연자, 행사내용이 확인 가능한 자료여야 함					
필수제출	※ 최근 활동 순으로 3건까지 인정					
자 료	개인 제출자료					
※ 미제출시	1. 지원신청서 (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)					
불합격처리	2. 첨부자료					
	- 주민등록초본 (공고일 기준(이전) 전라남도 내 거주 확인) ※ 공고일 이후 발행 본만 인정					
	- 개인의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 실적자료 3개 이내					
	※ 행사명, 행사일시, 주최·주관, 출연자, 행사내용이 확인 가능한 자료여야 함					
	※ 최근 활동 순으로 3건까지 인정					

# 문화예술해외교류

문화예술해외교류사업은 해외 초청, 지역 간 상호 교류행사 등 '지역 문화예술의 해외 진출'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 홍보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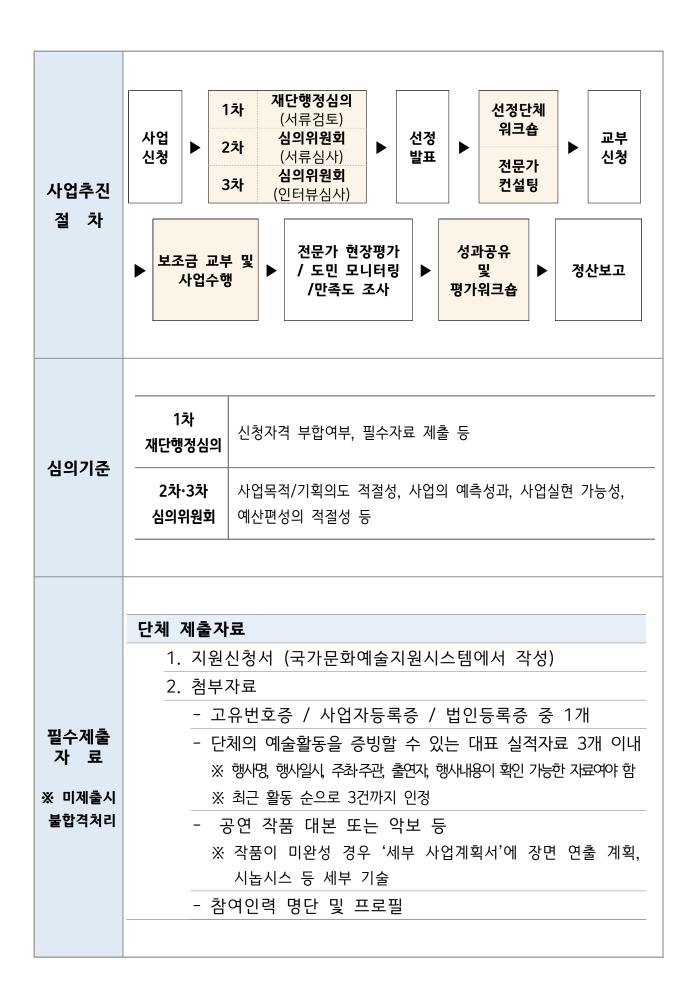
신청자격	◈ 전남도내 거주 예술단체 및 예술인					
지원영역	<ul> <li>◆ 국외 또는 도내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 교류활동</li> <li>- 도내 단체(개인)의 국외 초청공연 및 교류전시</li> <li>- 해외 예술가(단체)와의 공동 협력사업</li> <li>- 도내 거주 작가의 해외 활동 등</li> <li>◆ 지원분야 : 전통예술, 시각예술, 공연예술, 문학, 문화예술연구</li> </ul>					
지원항목	국외진행-아웃바운드 항공비, 화물비, 번역비, 홍보비 (Out-bound) (해외초청 등에 의한 교류 공연·전시 등)  도내진행-인바운드 장소 임차비, 통역비, 홍보비, 해외 예술가의 국내 교통비 및 체류기간 숙박비					
지원한도	◈ 사업별 30백만원 이내					
사업추진 절 차	사업					

심의기준	1차 재단행정심의 2차·3차 심의위원회	신청자격 부합여부, 필수자료 제출 등 사업목적/기획의도 적절성, 사업의 예측성과, 사업실현 가능성,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 ※ 사회적 기여 필수, 단체 간 단순 교류 방문 행사 배제, 상호 호혜 원칙		
우대사항	<ul><li>◆ 초청장 또는 MOU 체결서 등 교류 예정 증빙자료</li><li>◆ 중·장기 문화예술 해외교류 계획</li></ul>			
필수제출 자 료 ※ 미제출시 불합격처리	2. 첨부 - 고 - 민 ※ - 서 * - 서 2. 첨부 - 주 - 가 ※ - 서	신청서 (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) 자료 유번호증 / 사업자등록증 / 법인등록증 중 1개 체의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 실적자료 3개 이내 행사명, 행사일시, 주최·주관, 출연자, 행사내용이 확인 가능한 자료여야 함 최근 활동 순으로 3건까지 인정 부 추진계획서 초청 측 제공사항 또는 초대 측 부담사항, 상호교류 계획, 성과목표, 세부예산서, 참여인력 필수 작성  나료 신청서 (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)		
	*			

# 공연예술창작

공연예술창작사업은 지역 역사·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창작이나 원작을 새롭게 각색한 작품 등 공연작품 창작을 지원하여, 예술인 창작의욕 고취 및 공연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
신청자격	<ul> <li>◈ 전남도내 거주 및 활동하는 공연예술단체</li> <li>※ 개인 신청 불가</li> <li>※ 중앙 및 지회, 연구회, 연맹, 협의체 등 협회 성격의 단체는 배제하며, 단체설립 목적이 공연 활동인 단체에 한함</li> </ul>				
	<ul><li>◈ 연극, 무용, 음악, 한국음악(국악), 뮤지컬, 오페라, 전통예술, 다원 예술 분야의 창작초연작품 또는 원작을 각색한 공연</li><li>※ 원작의 80% 이상 각색 필수</li></ul>				
_,,,,,,,,	필수사항	비 고 			
지원영역	공연작품 창작 및 3회 이상 공연 - 전남도내 실내 및 야외 공연장 공연 - 도외에서 공연 1회 추진 가능 - 쇼케이스 및 공개 리허설 시 공연 횟수 인정 - 재단 통합발표회 참여 시 공연 횟수 인정	출연진, 스탭 등 공연 관계자 중, 중·고·대학생(대학원생 제외) 의 수가 30%를 초과할 수 없음 ※ 심의 및 공연 전·후, 참여인력 명단 및 이력 재단 제출 필수			
<b>지원항목</b> (예시)	◈ 출연료, 연출료, 작품료, 홍보비, 대관료, 음향비, 무대제작비 등				
지원한도	◈ 사업별 50백만원 이내 ※ 사업비 30백만원 이상 시 분할 교부				



# 레지던스 프로그램

레지던스 프로그램은 레지던시 공간을 갖추고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예술 가에게 일정 기간 창작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·제공하고 창작발표 및 지역민과의 교류·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신청자격	◈ 전남도내 창작활동 공간과 레지던시 공간을 갖추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					
지원영역	<ul> <li>◈ 입주 예술가의 작품 제작 및 발표, 커뮤니티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직원</li> <li>◈ 입주 예술가의 개인 창작활동비(월 50 億) 단체 소속 기획자 및 문화예술 활동 관련 (총 사업비의 20% 이내)</li> <li>필수사항</li> <li>・ 입주 예술인과는 별도의 기획자(프로젝트 추진 및 지원, 행정 담당) 및 문화예술 활동 관련 전문가(큐레이터 등) 참여 필수</li> <li>・ 기존(2019년)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여 입주 예술인 중 1/3이상 교체 원칙</li> <li>・ 공모를 통한 레지던시 작가 선정 필수</li> </ul>	접 경비 중 일부 지원이만원) 3개월 이상 지원 원칙				
<b>지원항목</b> (예시)	<ul><li>◈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비, 기획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등 (입주 예술가 창작활동비, 기획자 인건비, 도록 제작비, 프로그램 운영비, 회계검사 수수료 등)</li></ul>					
지원한도	◈ 사업별 70백만원 이내 ※ 사업비 30백	만원 이상 시 분할 교부				

사업추진 절차	사업		
심의기준	1차     신청자격 부합여부, 필수자료 제출 등       2차     사업목적/기획의도 적절성, 사업의 예측성과, 사업실현 가능성,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       3차     청작활동 및 레지던시 공간 적절성 (전문가 및 사업 담당자 평가)       4차     사업목적/기획의도 적절성, 사업의 예측성과, 사업실현 가능성,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		
필수제출 자 료 ※ 미제출시 불합격처리	단체 제출자료         1. 지원신청서 (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)         2. 첨부자료         - 고유번호증 / 사업자등록증 / 법인등록증 중 1개         - 단체의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 실적자료 3개 이내 ※ 행사명, 행사일시, 주최주관, 출연자, 행사내용이 확인 가능한 자료여야 함 ※ 최근 활동 순으로 3건까지 인정         - 공간 관련 증빙자료(사진, 도면 등)         - 참여 예술인 명단 및 프로필 또는 구성(안)         ※ 2019년 입주예술가 명단포함         - 세부 추진계획서         ※ 세부 프로그램별 계획, 성과목표, 세부예산서, 참여인력 필수 작성		

# 우리마을 아트페스티벌

우리마을 아트페스티벌은 마을 단위의 문화예술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특화된 아트페스티벌을 기획, 개발·운영하는 사업입니다.

본 사업은 주민이 주도하고 함께하는 차별화된 기획사업으로 사업지역 지자 체와의 협력과 사업 매칭비가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.

신청자격	◈ 문화예술단체 ※ 전남도에서 사업이 가능한 단체(단체 소재지 무관)
지원영역	<ul> <li>▶ 지원분야: 우리마을 여건을 반영하고 특성과 스토리를 활용한 페스티벌</li> <li>※ 마을 스토리 연계 페스티벌, 마을의 특화된 콘텐츠를 활용한 축제, 마을 주민이 주도 하는 페스티벌 등</li> <li>※ 연례적인 기존행사 및 축제, 주민교육프로그램, 단순 공연행사 및 축제, 지역 특산물 판매 등에 중점을 둔 행사 지원불가</li> <li>◆ 기획자, 주민, 예술인이 참여하는 페스티벌이어야 하며, 참여자 중 주민 비율이 60% 이상 차지하여야 함</li> <li>◆ 사업준비를 포함한 사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함</li> <li>◆ 원활한 사업기획과 추진성과를 위해 재단과 함께하는 PM 제도 (컨설팅, 전문가 자문 등) 운영</li> </ul>
지원항목	◈ 페스티벌 운영 경비 지원 (출연료, 홍보비, 임차비, 기획자 인건비 등)
지원한도	<ul> <li>◆ 지원예산 : 40백만원 이내 (지자체 1:1 매칭비 필수)</li> <li>※ 예) 총 사업비 : 80백만원(재단 40, 지자체 40)</li> <li>※ 매칭비는 지자체가 교부 및 정산함</li> <li>※ 사업비 30백만원 이상 시 분할 교부</li> </ul>

사업추진 절 차	1차   재단행정심의 (서류검토)   2차   심의위원회 (서류심사)   조차   심의위원회 (인터뷰심사)   조차   인터뷰심사)   조차   전문가 전설팅   조차   조차   고부 신청 및 사업 수행   조차   교부 신청 및 사업 수행   조차   교부 신청 및 사업 수행   조차   조차   조차   조차   조차   조차   조차   조		
심의기준	1차     신청자격 부합여부, 필수자료 제출 등       2차·3차     사업목적/기획의도 적절성, 사업의 예측성과, 사업실현 가능성,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		
우대사항	<ul> <li>◈ 지자체 매칭비율이 높은 경우</li> <li>◈ 사업추진을 위해 권역별 네트워크가 가능한 단체인 경우</li> <li>◈ 문화향유율 확대와 성과확산을 위한 협업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</li> </ul>		
필수제출 자 료 ※ 미제출시 불합격처리	단체 제출자료         1. 지원신청서 (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)         2. 첨부자료         - 고유번호증 / 사업자등록증 / 법인등록증 중 1개         - 단체의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 실적자료 3개 이내 ※ 행사명 행사일시, 주화주관, 출연자, 행사내용이 확인 가능한 자료여야 함 ※ 최근 활동 순으로 3건까지 인정         - 지자체 및 기관과의 매칭 확약서 및 공문         - 전문 기획자, 참여 예술인 명단 및 프로필 또는 구성(안)         -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진, 장소 및 거리사진 등         - 세부 추진계획서 ※ 세부 프로그램별 계획, 성과목표, 세부예산서, 주민 참여 방안 필수 작성		

# 청년예술가활동

청년예술가활동사업은 우수한 재능을 갖춘 지역 청년예술가를 발굴하여, 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대표 예술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
☞ 1년차(창작준비): 공모방식으로 선정 / 2년차(창작발표): 1년차 사업수행실적 평가를 통해 선정

신청자격	<ul> <li>◆ 전남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예술가(개인)</li> <li>※ 단체는 지원신청이 불가하며, 2019년 선정단체는 예외로 함</li> <li>※ 2020년 2년차 지원대상(2019년도 수행완료 예술가)은 2020년 1월 평가 예정</li> </ul>				
	구 분	공 통	단게별	필수사항	비고
	창작준비 (1년차)	· 창작활동비 지원 (재료비, 회의비 등)	· 창작역량 강화 (기초) 지원		창작단계 시
지원영역	창작발표 (2년차)	<ul> <li>· 창작공간 지원</li> <li>(작업실, 연습공간 등</li> <li>임차비 일부)</li> <li>※ 임차비 : 보조금</li> <li>30% 이내 편성 가능</li> </ul>	· 창작발표 지원 (대관료, 홍보물, 사례비 등) · 창작역량 강화	지정 멘토 프로그램 진행	창작발표 재단·멘토와 협의를 통해 진행 가능
	※ 2년 연속지원 여부 결정				
	: 1년차('20년) 사업수행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2년차 ('21년) 지속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				
	<ul><li>◈ 창작준비(1단계) : 사업별 10백만원 이내</li><li>◈ 창작발표(2단계) : 사업별 15백만원 이내</li></ul>				
지원한도					

사업추진 절차	사업 신청	<b>D</b> / 누비 무	니터링 ▶	선정단체 워크숍 전문가 컨설팅 성과공유 및 평가워크숍	교부 신청 정산보고
심의기준	1차     신청자격 부합여부, 필수자료 제출 등       2차·3차     사업목적/기획의도 적절성, 사업의 예측성과, 사업실현 가능성,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				
필수제출 자 료 ※ 미제출시 불합격처리	2. 첨부 - 주 <b>※</b> - 기 * - 서	신청서 (국가문화 <sup>0</sup>	일 기준 전리 만 인정 ·빙할 수 있 주관, 출연자, 형	<b>나남도 내 거주 혹</b> 는 대표 실적자회 방사내용이 확인 가능한	료 3개 이내한 자료여야함

##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

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 간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 창작환경 속에 공연단체의 예술적 창작역량 강화 및 우수 작품 제작·발표를 촉진시키고, 공연장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며,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
	구분	사업효과		
사업효과	공연예술 단체	<ul> <li>▶ 안정적 단체운영 기반 확보</li> <li>- 공연, 연습·사무공간 등 물적 기반(H/W) 확보</li> <li>- 기획·홍보·마케팅 등 유통 기반(S/W) 활용</li> <li>▶ 우수 작품 창작 및 발표 기회 확대</li> </ul>		
	공연장	▶ 우수 레퍼토리 확보, 관객개발 증진, 공연장 가동률 제고 ▶ 예술교육 등 Out-Reach 프로그램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▶ 공연장 특성화 기반 마련		
	지역주민	▶ 우수 공연, 퍼블릭 프로그램 향유		
	- 연극,	<b>; 상주단체</b> 무용, 음악,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활동을 전문적으로 - 공연예술단체		
	 분야	지원 대상 단체		
	 연극	연극분야(아동·청소년극, 뮤지컬 포함) 전문극단		
신청자격	무용	한국무용, 현대무용, 발레 등 전문 무용단		
L 0717	음악	실내악단, 교향악단, 합창단, 중창단, 오페라단 등 창작·연주 전문단체		
	전통예술	음악, 무용, 연희 등 전통예술창작 · 공연전문단체		
	- 전남도	E내 공연예술단체로 3년 이상 활동 필수		
		<b>!체 - 공연장 간 협약 필수</b> 술단체와 공연장 간 상주단체로 매칭하고 협약함		

#### ※ 대상 공연장

- · 전국의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으로서, **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** 한함(공연장 등록증 필수 제출 및 민간 공연장 배제)
  - ※ 공연장 등록은 소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(시,군,구)에 신고하는 절차에 의하며, 공공 공연장은 정부나 지자체의 투자·출자 또는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·운영되는 공연장을 의미함
- · 상주 가능한 시설을 구비하고 상주단체를 운영하는 공연장에 한합(비상주 단체 배제)
  - ※ 상주 가능한 시설 요건
    - 사무실 : 별도 공간 제공 필수, 책상 및 컴퓨터 기본 설치, 안내판 부착 등
    - 연습실 : 공동 사용 연습실도 인정하며, 별도 연습실이 없을 경우 공연장을 연습 공간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(단, 활용 계획 제시)
  - ※ 지원신청 시 상주 가능한 시설(사무실, 연습실) 구비 현황을 협약서에 명시하여 제출
- · 상주단체의 공연장 무료 사용(제반 부대비용 포함)을 필수로 함 (유료 대관 공연장 배제)
  - ※ 단, 불가피하게 공연장 사용료를 부과하고 수입금을 상주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'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'의 사업비로 전액 집행할 경우 무상 제공으로 인정함 (지원신청 시 계획서에 기재하고, 정산 시 증빙자료 제출)

### 신청자격
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표준협약서를 기준으로 협약 (MOU) 체결을 원칙으로 함
- 협약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

#### 공연장 역할(임무)

## ▶ 협약 공연단체에 사무실, 연습실 등 상주 공체적으로 스해(

- ▶ 업약 공연단세에 자무실, 연급실 등 정수 공간 무상 제공(제공시설 내역 명기)
- ▶ 협약 공연단체의 공연장 사용료 면제 및 사용 우선권 부여
- ▶ 협약 공연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적극 협력
- ▶ 공연장 가동률 제고 노력
- ▶ 공연장 상주단체 간 교류 공연(상주단체 페스티벌 포함) 시 타 공연 단체에게도 협약단체와 동일한 혜택 부여(대관료, 연습실 사용료 등 면제 및 편의 제공)
- ▶ 보조금 정산(세부내역 정산 협조)

- 상주단체 역할(임무)
-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 제반사항 주체적으로 수행(작품 기획 및 제작, 홍보 마케팅, 퍼블릭프로그램 운영, 성과관리 등)
- ▶ 우수작품 창작(창작 초연 작품 및 우수 레퍼 토리) 개발 노력
- ▶ 퍼블릭 프로그램(교육 및 관객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) 실시
- ▶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하여 공연장과 적극 협력을 통한 성과 제고
- ▶ 공연장 상주단체 간 교류 공연 시, 타 공연단체에 대해 적극 협력(홍보마케팅 등)
- ▶ 공연장 가동률 제고 노력
- ▶ 보조금 정산 총괄

#### ◈ 상주단체 참여자 간 계약

- **표준계약서 체결 필수** : 공연단체는 사업에 참여자(피고용인=출연진, 스탭 등)와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함 ※ 문화체육관광부 보급

## ◈ 1개 상주단체 당 최소 8천만 원 ~ 최고 2억 원 이내

### - 1개 공연장에 1개 단체 상주로 제한

## 지원한도

- 안정된 창작환경 제공의 사업취지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최대한 선택·집중 지원하고, 소액다건 지원은 지양
- 다만,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신청단체의 수, 신청사업의 특성(장르) 및 사업계획(내용, 규모, 소요예산 등), 예술적 성과, 공연장-상주단체 간 협력정도, 지역 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규모 조정 가능

## ◈ 상주 공연장에서의 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함

	구 분	사 업 내 용
	창작초연 작품 개발 (1작품 이상)	[연극·무용] : 창작초연(60분 이상) 1편 [음악] : 창작초연(극, 음악 등 대작 1편 또는 단편 곡 각 5분 이상 6곡-30분) ※ 지역의 인물·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제작된 초연 창작 작품에 한함
필 수 프 로	레퍼토리공연 (2작품 이상)	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작품이나 공연하였던 우수 작품을 2작품 이상 공연 ※ 1회에 한해 타지역 상주단체를 포함하여 상주단체 간 교류사업 가능
템	퍼블릭 프로그램 (1개 이상)	주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진행 - 교육 : 지역민을 위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 - 문화나눔 :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- 기타 : 지역특성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
	상주단체 간 교류 · 협력 (1회 이상)	상주단체 합동공연 또는 상주단체 페스티벌(기획사업, 통합 발표회) 참여로 교류·협력 확대 및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사업 추진
권장프로그램		조직역량 강화 - 상주단체 단원의 예술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- 공연장 및 상주단체 관계자 조직운영(기획, 홍보, 마케팅, 회계 등) 역량 강화 프로그램

## 수행 프로그램

#### 재단행정심의 1차 1차 선정단체 (서류검토) 교부 심의위원회 워크숍 2차 신청 사업 선정 (서류심사) 발표 밓 신청 전문가 현장평가 3차 전문가 사업 심의위원회 컨설팅 수행 4차 사업추진 (인터뷰심사) 절차 2차 중간성과 교부 점검 전문가 현장평가 성과공유 신청 정산 / 도민 모니터링 및 보고 및 /만족도 조사 평가워크숍 전문가 사업 컨설팅 수행

#### ◈ 심의방법

- 공연단체와 공연장 관계자의 동반 참석을 필수로 하며,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심의진행(공연단체와 공연장의 심사점수 반영비율 60:40)
- 공연장 예산 매칭의 경우 우대 (협약단체 지원계획 10점 중 2점)

*매칭비율	0% 이상 ~ 5% 미만	5% 이상 ~ 10% 미만	10% 이상 ~
또는 매칭예산액	0원 이상 ~ 500만원 미만	500만원 이상 ~ 1,000만원 미만	1,000만원 이상 ~
반영 점수	0점	1점	2점

#### 심의운영

- ※ \*매칭비율은 사업에 필요한 총 예산액을 기준으로 함
- ※ 지자체 및 공연장과의 예산 매칭 확약서 및 공문 첨부 필수
-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목적 달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평가
- 공연장 상주단체 시설 구비 현황 및 실제 활용 계획, 공연장과 단체 간 협력 활동 계획 등 기본사항을 점검
-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전담(기획, 행정 등)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우대 선정
-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결정 ※ 심의 결과발표 후 1개월 이내 사업포기 시 불이익 없음

## ◈ 심의기준

- 상주단체 : 60점

심의 세부항목	심의기준	
공연장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계획 (25)	<ul> <li>▶ 프로그램의 우수성</li> <li>-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독창성, 차별성, 완성도</li> <li>- 단체의 역량으로 예측 가능한 예술적 완성도</li> <li>- 해당분야에 미칠 파급효과, 예상 기여도</li> <li>▶ 실현 가능성</li> <li>- 공연장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여부</li> <li>- 공연장의 계획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여부</li> </ul>	
협력 의지 및 노력도 (15)	▶ 공연장과 매칭 현황 - 공연장과 상주 협약 체결 여부 - 공연장에서 희망하는 조건 충족 여부	
창작역량 및 활동실적 (10)	<ul> <li>▶ 최근 3년간 공연 및 수상실적</li> <li>- 창작활동 실적 및 레퍼토리 구축 실적</li> <li>- 각종 대회 및 예술제 참가, 수상실적</li> <li>- 각 기관별 지원금 수혜 내역 및 사업 수행실적</li> <li>- 관객개발 성과</li> <li>▶ 단체에 대한 외부평가</li> <li>- 언론 및 예술전문지 공연평 등</li> </ul>	
조직역량 (10)	▶ 조직운영 역량 - 전문예술법인(단체) 지정 또는 사회적기업 여부 - 보유 인력(예술가, 행정가 등) 및 협력 인력 현황 - 단체의 조직운영 및 경영상태	

## 심의운영

- 공연장 : 40점

9 6 9 7 10 6			
심의 세부항목	심의기준		
상주단체와 협력 프로그램 운영계획 (10)	<ul> <li>▶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적절성         <ul> <li>공연장 여건 및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 계획 여부</li> <li>관객개발 프로그램 계획의 적절성</li> </ul> </li> <li>▶ 프로그램 실현가능성             <ul> <li>예산 및 자원 확보 여부</li> <li>기타 유사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</li> <li>공연장 가동률 제고 계획</li> <li>연간 가동률 향상 계획(전년도 실적 대비 향상)</li> </ul> </li> </ul>		
협약단체 지원계획 (10)	<ul> <li>▶ 상주여건 제공         <ul> <li>상주단체에 공간(사무실, 연습실 등) 무료제공 여부</li> <li>상주단체에 공연장 무료대관 여부</li> </ul> </li> <li>▶ 상주단체와 적극적 협력 여부 ※ 예산매칭 여부: 2점</li> <li>상주단체와의 협업 의지와 노력의 정도</li> </ul>		
기획 및 홍보마케팅 역량 (10)	<ul> <li>▶ 인적역량         <ul> <li>대표자 또는 담당자의 전문성</li> <li>홍보·마케팅·기획 인력 보유현황 및 계획</li> </ul> </li> <li>▶ 신청주체의 활동실적 : 기획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·마케팅 실적</li> </ul>		
시설 및 운영 역량 (10)	<ul> <li>▶ 시설 및 운영현황</li> <li>- 객석규모, 무대시설 현황, 부대시설 등</li> <li>- 가동률, 객석 점유율, 기획프로그램 제작비율 등</li> <li>▶ 인력현황</li> <li>- 무대시설 및 전문기술인력 보유 현황</li> </ul>		

#### ◈ 운영지침

- 상주단체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기획재정부의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」, 문화체육관광부의 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」을 준수하여야 함
- 상주단체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국문화 예술위원회의 「보조금 운영관리규정」과 재단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
- 보조금 사업의 객관성·투명성·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조금 정산원칙 (절차)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함

#### ◈ 보조금 신청 및 교부 : 2회 분할 지급 원칙

구분	1차 교부	2차 교부
교부액	보조금 50% 지급	보조금 50% 지급
교부시기	2019. 3월 ~ 5월	2019. 7월 ~ 9월
교부조건	e나라도움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	전년도 사업 정산 완료 및 사업 중간점검 통과

## 보조금 관리 및 운영

- 보조금 교부신청 세부절차는 추후 별도 안내

### ◈ 보조금 편성

- 예산 편성 (매칭 비율)
- · 국고보조금(예술위원회 기금) 50 : 지자체보조금(광역 자치단체) 50 으로 편성
- 공연장상주단체 사업비 편성

항 목	편성비율	편성여부
상주단체 사업비	50~100%	필수
상주단체 운영비	0~30%	선택
공연장 필요경비	0~20%	선택

## ※ 편성 및 집행 불가 항목

(한국예술위원회「보조금 운영관리규정」제7조 제5항)

- 단체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,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
- 단체 대표자의 급여성 인건비, 당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과 무관한 직원의 급여성 인건비 및 단체 운영경비
- 당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과 무관한 단순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
-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경비

- 상주단체 사업비
  - 편성 비율 : 보조금 총액의 50% 이상
  - · 필수 프로그램과 선택 프로그램 추진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(제작비, 재료비, 출연료, 사례비, 임차료, 홍보비 등)
- 상주단체 운영비
  - 편성 한도 : 보조금 총액의 30%
  - ·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

구 분	공통기준	집행 용도	집행 가능 항목
인건비	공연장상주 단체 육성지원 사업 직접 관련	상주단체가 필수·선택 프로 그램을 추진하는데 필요로 하는 전담인력의 인건비	기획 및 행정인력 인건비
사업 운영비		상주단체가 필수·선택 프로 그램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외의 필요경비	0.00 .00

#### - 공연장 필요경비

- 편성 한도 : 보조금 총액의 20%
- · 공연장상주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연장이 필요로 하는 경비
  - : 프로그램 운영, 작품 제작, 홍보·마케팅, 일용임금(상주공간 관리, 관객안내) 등으로서, 경비 집행주체는 공연장상주단체임
    - ※ 단, 자산취득 등 공연장이 부담해야 할 용도로 사용 불가
    - ※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예술인력지원사업(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, 공연기획 및 경영전문인력지원,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)의 인건비와 중복지원 불가
    - ※ 예술단체간 거래 : 공연에 필요한 무대 및 소품 제작, 기자재 임차 등은 우선적으로 전문 업체와의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, 예술단체 간 거래 시 명확한 증빙자료(세금계산서, 견적서, 이체증, 통장사본 등) 제출
      - ▶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: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
        - ※ 단,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로부터는 종이세금계산서 수령 가능
  - ※ <u>상주단체의 대표, 사무국장 등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의 거래 불가</u>
- · 보조금을 공연장 대관료, 사무실 및 연습실 사용료 등 상주단체에게 무상 제공하는 예산항목으로 사용불가
  - ※ 상주단체는 대관료, 사무실 및 연습실 사용료 등을 입주의 대가로 지불하지 않는 대신 공연장에 프로그램을 제공

## 보조금 관리 및 운영

	◈ 보조금 집행 및 정산		
보조금 관리 및 운영	보조금 교부	ㅇ 교부대상 : 상주단체 ※ 공연장이 아님	
		ㅇ 교부시기 : 사업시행 전 교부 ※ 2회 분할 교부	
	보조금 교부신청 및	o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의 주체는 상주단체로 지정 o 상주단체가 직접 집행 및 정산	
	보조금 정산	012 11 12 2 0 2	
	보조금 수령자의 성과 및 정산보고	o 보조금 수령자는 지원 대상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성과 및 정산 보고서를 재단에 제출	
		o 보조금 수령자는 성과 및 정산보고 시, 재단이 사용하고 있는 관리시스템(e나라도움시스템,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) 사용	
		o 보조금 수령자는 반드시 보조금을 정산하고, 이에 대한 집행 증빙자료를 제출	
		ㅇ 정산보고서의 검증	
		- 「보조금법」, 「보조금법 시행령」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함	
		- 이에 따른 소요경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가능	
	보조금 집행잔액 처리 및 정산심사	o 보조금 수령자는 사업성과 및 정산보고 시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예금결산 이자를 반드시 반납	
		o 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예산편성 비율만큼 반납하여야 함. 단, 수익금을 교부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음	
		o 인건비성 사례비, 원고료 등 각종 수당과 인건비는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관할 세무서 및 시· 군·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	
		o 재단은 보조금 수령자의 성과 및 정산 보고서 내용에 대한 수정·보완을 요청하거나 보조사업 수행 현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	
	성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	o 재단에 성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하는 보조금 수령자는 성과평가 시 불이익 부여	
	감점	※ 선정단체 워크숍 시 세부사항 공지	

#### ◈ 보조사업 관리

- **사업명 :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** ※ 세부사업명 : 상주단체별 별도지정
- 후원 명칭 사용 의무
  - · 보조사업자는 각종 사업 홍보물에 해당 사업이 「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 진흥기금, 전라남도, (재)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지원사업」임을 반드시 명시
    - 각종 홍보물(현수막, 포스터, 전단, 팜플렛 등)과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, [후원 :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전라남도, (재)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] 기재
    - o 공연 프로그램, 리플렛, 포스터, 도록, 음반 및 인쇄물 제작하는 경우, [한국문화예술위원회, 전라남도, (재)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공연장상주 단체육성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.] 기재

## 보조금 관리 및 운영

-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로고
  - : 한국문화예술위원회 '누리집(www.arko.or.kr)'- 아르코소개-CI소개
- ㅇ 전라남도 로고
  - : 전라남도 '누리집(www.jeonam.go.kr)'-전남소개-전남의 상징-CI디자인
- ㅇ 전남문화관광재단 로고
  - :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'누리집(www.jact.or.kr)'-재단소개-CI안내
- · 각종 홍보물(유인물)에 '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'임을 명시하여 사업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함

#### - 표준계약서 사용

- · 공연예술 분야(창작·출연·기술지원 계약)의 경우, 사업 수행 시 문화 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 필수 사용
  - ※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유관광부(https://www.mcst.go.kr) → 자료공간 → 법령자료 → 표준계약서에서 내려받기 가능
- 보조금 수령자는 보조금 전용통장과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 (e나라도움 전용카드)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
-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상주단체는 재단의 모든 지원사업에 지원 불가

#### 단체 제출자료

- 1. 지원신청서 (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)
- 2. 첨부자료
  - 세부 사업계획서
    - ※ 별첨 서식 작성 후, 첨부
    - ※ 파일명: 2020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공모\_세부 사업 계획서 단체명
  - 활동 및 상주 계획 증빙자료
    - ※ 별첨 서식 작성 후. 첨부
    - ※ 파일명: 2020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공모\_제출자료 \_단체명
    - ① 고유번호증 / 사업자등록증 / 법인등록증 중 1개
    - ② 단체의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 실적자료 5개 이내 ※ 공연명 공연일시, 주화주관, 출연자, 공연내용이 확인 가능한 자료여야 함 ※ 최근 활동 순으로 5건까지 인정
    - ③ 공연단체-공공 공연장 간 협약서 ※ 재단 누리집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
    - ④ 공연장 등록증
    - ⑤ 공연장 정보 및 운영현황
    - ⑥ 공연단체 제공 사무실, 연습실 사진
    - 지자체 및 공연장과의 예산 매칭 확약서 및 공문

## 필수제출 자 료

※ 미제출시 불합격처리